방법 1 KRAS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통한 위험성평가표 작성

- O 인터넷 주소 : <u>http://kras.kosha.or.kr/</u>
- O 회원 가입 실시 및 사업주 로그인
- O KRAS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화면에서「위험성평가 실시」 클릭



O「위험성평가(5단계) 방법」 클릭 후 화면 하단의「선택한 평가방식으로 평 가 시작」을 클릭하여 다음순서로 평가 진행



☆ 위험성평가 실시 전 메인화면에서「사용법 동영상」을 보신 후
 「가상체험하기」를 실시하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평가결과 보기에서「엑셀다운로드」하여 파일 저장 후 온라인 참여 신청

(clean.kosha.or.kr)입력 시 파일 첨부

방법 2 위험성평가표를 서면으로 직접 작성

O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위험성 평가표를 작성 후 결재하여 클린신청서에 첨부하여 참여신청(위험성평가표, 위험성 추정 및 위험관리 기준)

위험성 평가표(예시)

담당	부장	대표

공정명 평가일시		위 험 성 평 가 ^{평가자} (리더및팀원)								
작업 내용	유해위험요인	현재상 태 및 조치	현 가능성 (빈도)	현재위험성 중대성 (강도)	5 위험 성	' 감소 대책	개선후 위험성 (추정)	개선 예정일	담당자	비 고

위험성 추정·결정 및 위험관리를 위한 자체 기준(예시)

<u> 이 빈도 및 강도 설정 기준</u>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			위험의 중대성(강도)		
구분	가능성						
상	3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6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음 	구문	중대성			
Кł	2	●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 2~6 시간인 경우 ● 발생 기능성이 있음	대	3	 사망을 조래할 수 있는 사고 회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을 초과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지어병 유 소 경대 방생 		
하	1	 실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시간이 매일2시간 미만인 경우 발생 가능성이 낮음 			• 488 #204 28		
			중	2	● 실명, 절단 등 상해를 초해할 수 있는 사고 ●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이상인 경우		
			소	1	●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 화학물질, 분진, 소음 등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미만인 경우		

O 위험성 결정 및 위험성 수준에 따른 관리기준

● 3*3위험성 추경기준					o 5*4	위험성 추정	경기준						
	중대성(강도)						중대성(강도)						
	대(3) 중(2) 소(1)						최대(4)	대 (3)	중(2)	소(1)			
	AF(3)	노요(4)	누우(0)	보통(3) 낮음(2)		최상(5)	매우높음(20)	높음(15)	약간높음(10)	낮음(5)			
-	014	- 11 - 12 (W)	2.5(*)			상(4)	매우높음(16)	약간높음(12)	보통(8)	낮음(4)			
가능성	중(2)	높음(6)	브통(4)		가능성 (빈도)	중(3)	약간높음(12)	약간높음(9)	낮음(6)	매우낮음(3)			
(21)	100000					하(2)	보통(8)	낮음(6)	낮음(4)	매우낮음(2)			
	하(1)	보통(3)	낮음(2)	낮음(1)		최하(1)	낮음(4),	매우낮음(3)	매우낮음(2)	매우낮음(1)			
위험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위혈	위험성수준 관리기준							
					1~3	매우낮음	현재의 안전대	현재의 안전대책 유지					
1~2	낮음	현재상태유지			4~6	낮음	안전정보 및 각	안전정보 및 주기적 안전보건교육의 제공이 필요한 위험					
						보통	유해위험의 표 필요한 위험	유해위험의 표지부탁, 작업절치서 표기 등 관리적 대책이 필요한 위험					
3~4	3~4 보통 개선		9~12	약간높음	정비,보수기간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할 위험								
		높음 즉시개선			15	높음	긴급 임시안전보건대책을 세운 후 작업 실시하고 정비 보수기간 전에 안전보건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해야 할 위험						
6~9	불음				16~20	매우높음	즉시 작업중지 (직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을 실행해야 하는 위험)						

위험성 평가표 【작성 사례】

공정명					위 험 성 평 가					평가자			
-8 -8	가열시	유해의허	유해위험요인 파악 과려근거 형재의헌성					서	(리너빛임권)		a		-
작업내 용	분류	원인	유해위험 요인	법적기준	현재상태 및 조치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9 위험성	감소대책	<mark>개선</mark> 일	완료일	담당자	비고
원재료 입고	기계적 요인	충돌위험 부 분	화물용리프트 비상정지버 턴이 파손되어 있어 비상시 신속한 전원자단이 불가하 여 사고 발생위험	안전보건규칙제 192조 [비상정지 장치]	미흡	3	2	6(높음)	화물용리프 트 비상정지 버턴 수리	2013-02-28		홍길동	
원재료 입고	기계적 요인	기계(설비) 의 낙하, 비래, 전복, 붕괴, 전도위험 부 분	화물용리프트 안전문이 열 린상태로 운반구 작동으로 작업자 끼임사고 위험	안전보건규칙제 155조 [운반구의 정지위치]	연동장치 <mark>사</mark> 용중	1	2	2(낮음)					2
원재료 입고	작업특성 요 인	중량물 취급 작 <mark>업</mark>	작업자 중량물 취급에 따른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	안전보건규칙제 666조 [작업자세 등]	인력운반	2	3	6(높음)	이동대차등 운반보조기 구 도입사용	2013-02-27		홍길동	
조립	기계적 요인	협착위험 부 분(감김,끼임)	탭핑기 상부 동력전달부 노 출상태로 작업중 작업자 신 체 및 옷자락이 말려드는 사고 위험	안전보건규칙제 87조 [원동기·희 전축 등의 위험 방지]	미흡	2	3	6(높음)	동력전달부 커버설치	2013-02-28		홍길동	
조립	전기적 요인	감전(안전전 압초과)	드릴기 모터부에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어 작업자 신체 접촉으롱 인한 감전사고 위 험	안전보건규칙제 301조 [전기 기 계기구 등의 충 전부 방호]	미흡	2	3	6(높음)	노출된 충전 부 절연조치	2013-03-01	(2) (2)	홍길동	